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3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11132)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47조의4 신설, 제47조의5, 제67조 및 제70조)	3
2.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안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17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1113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6. 27.

다.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도로 양도·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서류를 위·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허가
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영업정지 등
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47조의4 신설 등)

개정안은 대폐차에 관한 사항 등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운송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7조의4(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의 통합적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대폐차에 관한 사항,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생략)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 ----- ----- ----- -----.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현행 제47조의5와 같

현행	개정안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생략)	음)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현행 제47조의6과 같음)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2. 제47조의5-----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등의----- ----- ----- ----- -----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 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의3. 제47조의6을----- -----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생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	21의2. 제47조의7-----

현행	개정안
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 ----- ----- -----
22. ~ 27. (생략)	22. ~ 2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재 화물운송 행정, 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대폐차, 자동차등록정보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 제63조 또는 제64조¹⁾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②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그리고 ③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되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음.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임·위탁 주체별 화물운송 행정정보 보유 현황 】

주체	대상	근거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 신규·변경허가, 양도·양수 신고 수리, 행정처분 등 (시·군·구 허가부서)	법 제63조, 시행령 제14조 ²⁾
	자동차등록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등록사업소))	
협회 (사도별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대폐차 관련 정보	법 제64조, 시행령 제15조 ³⁾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송실적 및 종사자 관리	법 제64조, 시행령 제15조 ⁴⁾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략)
6. 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 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중략)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후략)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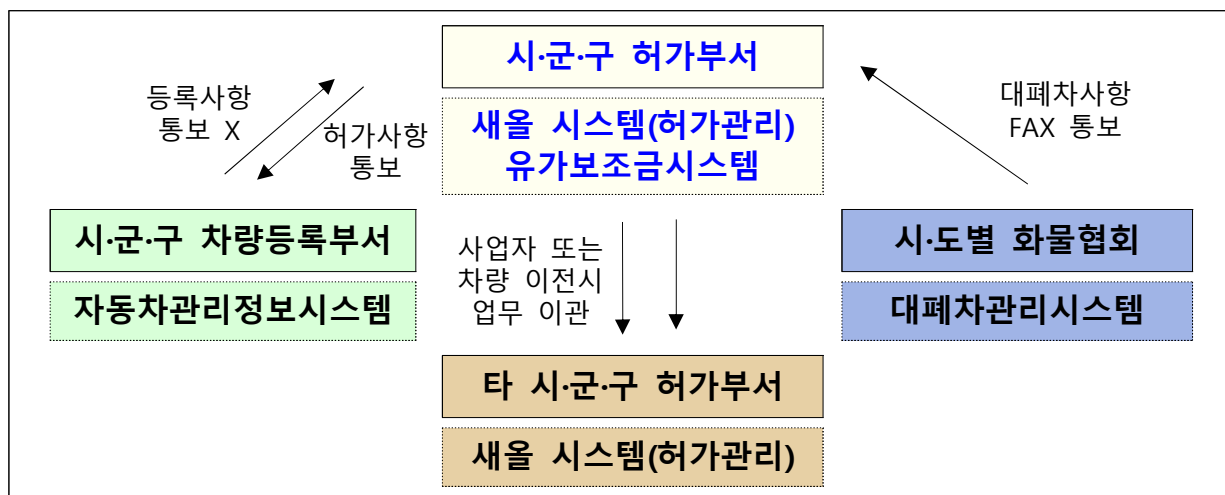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군·구 허가부서는 각 기관이 통보한 정보(대폐차 신고수리 내역, 타 지자체 업무이관 내역)을 전자화하여 현행화해야 하나, 허가부서에서 운송사업자 허가대장을 수기식으로 관리⁵⁾하고 통보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화물운송 기본 통계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음.

【 화물운송사업자 관리 업무 체계 】



①신규허가·증차, 관할지역 이전, 양도·양수 : 허가부서(허가) →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

②대폐차, 영업소 이전 : 화물협회(신고필증 발급) →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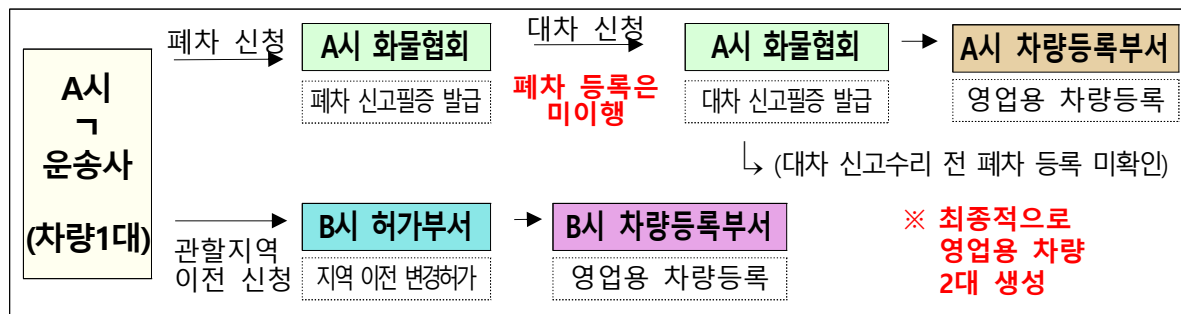
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관리 자료의 요청
- 5) 허가 처리내역 및 각 기관의 통보사항을 서울시스템에 직접 입력(수기)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대부분 작성·편집이 용이한 엑셀 파일로 관리

또한 현재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는 허가대장은 차량 단위 사업권인 ‘번호판’별로 허가이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번호판별 허가조건(직영의무, 양도금지 등), 허가변경 이력, 지입 여부 등 중요 정보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지역 이전 및 허가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증차 등 위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 이전(지자체) 및 대폐차(협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스템 혼선을 이용하여 불법증차가 발생한 사례⁶⁾⁷⁾가 있는 등 정보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화물운송 시장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증차 발생 사례(이중 번호판) 】



* 대폐차 신고기한 : 폐차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지입차주가 계약해지한 경우 등)

※자료 : 국토교통부

- 6) 연합뉴스, 「번호판 이중 등록해 화물차 불법 증차...경찰, 운수사업자 입건」, 2024.10.11.
 - 화물차 5대의 번호판을 광주에서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실정을 악용하여(말소처리 완료기간은 6개월으로 시차 이용) 2020년 8월부터 3년동안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광주와 군산에서 5대씩 이중등록하는 등 불법증차한 사례
- 7) MBC 뉴스, 「1조 원대 화물차 번호판 암시장 추적」, 2021.11.08.
 - 한 지역에서 폐차하는 척하며 이 번호판을 다른 지역 화물차에 넘기면서, 동시에 이 번호판을 원 지역에서도 새차에 붙이는 번호판 복제(쌍둥이 번호판)
 - 예를 들어, 폐차를 할 때 청소차를 폐차한 뒤, 이 번호판을 트랙터 화물차에 붙이고(차종 바뀌치기), 대폐차 과정을 수행하는 지역 협회 간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번호판을 다른 지역 화물차에 넘기는 동시에 이 번호판을 원래 지역에서도 새차에 붙이면서 번호판이 두 개로 늘어남.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⁸⁾에 따르면 화물운송행정업무 중 인허가 업무는 행정처분 정보를 통해 인허가 가부가 결정되나,

행정처분 정보는 협회 인허가 행정처분 정보,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정보,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정보, 안전운임 행정처분 정보 등 정보가 여러 유관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처분 정보의 연계가 어려우므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에 개정안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행정 유관 시스템의 칸막이를 없애 관련 정보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 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토교통부,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2024)

【 화물운송행정 통합·연계 필요 시스템 현황(14개 시스템) 】

행정시스템명		시스템 내용	관리주체
통합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 2대 이상의 화물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는 매년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하여 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안전운임제신고시스템	· 화물운임 지급 위반, 위·수탁계약 관련 부당금전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신고 접수 및 행정처분 민원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폐차관리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부 고시)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형별·톤급별 대차, 폐차 업무 시스템	국토부
	운수종사자관리	· 화물운수종사자의 현황(사고, 자격, 경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핵심연계시스템	새울행정시스템(화물인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가맹 사업의 신규, 변경(이전), 폐업 등 인허가 관련 업무시스템	행안부
	자동차전산망	· 전국 자동차의 생애를 관리하는 총괄행정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폐차관리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부 고시)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형별·톤급별 대차, 폐차 업무 시스템	협회
	자격시스템	·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부 고시)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연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보조하는 시스템	국토부
장기연계시스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공영 화물차고지 및 화물차 휴게소 현황 운영 시스템	국토부
	정부24	·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를 전자형태로 발급 받아 기관에 전자적 제출 시스템	행안부
	법인등록번호조회 시스템	· 화물운수사업자 허가정보 법인등록번호 진위 조회 시스템	대법원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시스템	· 화물운수사업자 허가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조회 시스템	국세청
	화물정보망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주선, 화주간의 운송지역, 거래내역 등 정보를 연계	민간사업자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47조는 운송사업자의 운송 및 주선실적 등 화물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⁹⁾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과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신설할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화물 운송실적관리시스템과 시스템 간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의 운송실적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이관하는 등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합 운영 시 법 제47조의2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근거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겠음.**

「전자정부법」 제67조¹⁰⁾는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투자, 연계추진 및 공동이용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¹¹⁾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송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시스템 간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

10)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11)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사전협의 검토절차)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략>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 <후략>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인 제47조의2 제3항을 개정하는 방안¹²⁾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통합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다른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및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법인등록번호조회시스템 등의 시스템과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보의 연계를 위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스템 간 연계 운영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안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음.¹³⁾

12)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예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3)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새올행정시스템(행안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전산망(한국교통안전공단),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법인등록번호조회시스템(대법원), 사업자등록번호조회시스템(국세청) 등 14개 시스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정보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됨(2024.5.21.시행,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212424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의2(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9.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한편, 개정안과 같이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205318)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관 간 정보 분산·연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도 취약한 상황이며, 운송사 허가 및 실적 정보 관리도 어려우며, 지입 현황 등 운송시장의 객관적 통계 생성과 이에 따른 정책 진단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도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불법증차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최근 특수화물차 번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차해 일반화물차로 둔갑한 차량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불법 증차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한 자가 운행정지를 받은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화물차 초과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공익상 폐해가 커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하므로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¹⁴⁾

개정안은 이처럼 차량 양도·양수 과정에서 불법 증차 차량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감차조치 등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양수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공감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¹⁵⁾ 화물자동차법에서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설령 양수인이 영업양도·양수 대상에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수인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

14) 뉴시스, 「인수 화물차 ‘불법증차’였네, 운행정지 먹었다…法 “적법”」, 2025.7.16.

1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으로 승계하므로,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¹⁶⁾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사업 면허 취소나 운행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¹⁷⁾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¹⁸⁾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적 처분사유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어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¹⁹⁾

제재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음.

1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535 판결의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1.23. 선고 2014누4239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8누2101 판결 등

18)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참조

19) 선의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양수계약 당시 알지 못하였던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당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선의의 양수인이 불법증차 등 위법차량을 양수한 경우, 그에 대한 허가취소 및 감차조치 등의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관련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권리구제 필요성이 감차처분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큰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할 경우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화물차 공급 증가 등 운송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할관청에서 불법 증차를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하는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악의의 양수인들이 관할관청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